

[동원시스템즈 협력회사 행동규범]

- 동원시스템즈(주) (이하 ‘동원시스템즈’라 함)는 윤리경영을 기본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의 지속가능발전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세계 모든 이들과 늘 함께하며 삶의 즐거움과 희망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회사 사회적 책임경영 행동규범(이하 “규범”이라 함)을 제정하여 모든 협력회사에게 인권/노동, 안전/보건, 환경, 윤리, 경영시스템 분야에서의 윤리적 기준과 법규 준수에 대한 구체적 실행 원칙을 제시합니다.
- 동원시스템즈 또는 동원시스템즈가 지정한 외부기관은 협력회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방문평가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협력회사의 중대 위반사항이 요청 기한 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동원시스템즈와 거래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협력회사는 본 규범 및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책임 있게 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 본 규범은 협력회사 관리정책 및 기준 변경 등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1. 인권/노동

1.1 차별금지

협력회사는 고용, 승진, 보상 및 교육 등의 대우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민족,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의 이유로 불법적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1.2 근로시간 준수

협력회사는 사내 비상 사태 및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법규에 의해 정해진 시간과 일수를 준수하고, 임직원이 원하지 않는 연장근로는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주 52 시간 이내 근로시간 준수 및 매 7 일마다 최소한 1 일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1.3 정당한 보상 및 복리후생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 임금기준에 따른 급여와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항목 등을 포함한 임금과 초과/야간근로시간에 대해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 인권 존중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성희롱, 성적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욕설,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금지합니다.

1.5 미성년 근로자 보호

협력회사는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은 15 세 미만 또는 현지 법령에 따른 법정 고용 최저 연령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만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근로자는 안전 보건상 위험한 공정 또는 연장/야간근로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1.6 법규준수 및 합법적인 근로보장

협력회사는 임시근로자, 계약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이주 근로자, 정규 직원 및 기타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 대해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와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2. 안전/보건

2.1 컴플라이언스

협력회사는 작업장에 적용되는 법령상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인허가를 취득/유지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2 위험확인 및 평가

협력회사는 안전보건을 보장하고 모든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한 후 제거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업장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적절한 통제, 예방적 차원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3 교육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장 내 안전보건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거나 쉽게 접근 가능한 곳에 비치 또는 설치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사고위험 및 유해인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합니다.

2.4 작업장 안전유지

협력회사는 근로장소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음식보관시설, 숙소, 화장실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작업장의 안전장구(안전모, 안전화, 반사 조끼 등)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 발생 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하고,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시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2.5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와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 및 추적하여 보고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2.6 유해요소 관리

협력회사는 사업장 내 화학적/생물학적/물리적 유해요소가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고, 정기

적인 작업환경을 평가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위험요인들에 대한 관리감독 및 기술적/행정적 조치 등을 통해 유해요인들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7 직원 작업 관리 및 취약 노동자 보호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단순 반복적 수작업이나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파악 하고, 그로 인한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임산부, 수유기 근로자, 장애인, 미성년자근로자 및 기타 취약 근로자(“취약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취약 근로자는 위험성이 높거나 유해 작업 근무에서 제외시키고 필요한 경우 취약 근로자 직무관련 안전보건 리스크를 제거하거나 저감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신을 한 근로자 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8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

협력회사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에 대해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해당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물리적 보호 장치, 안전장치, 방호벽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3. 환경

3.1 환경 컴플라이언스

협력회사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인허가(예: 대기배출시설 등) 및 등록 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2 오염방지 및 자원/에너지사용 저감

협력회사는 오염원의 발생을 줄이고 저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원/에너지(물, 화석연료, 광물 등)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분석하고 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량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3 화학물질 관리

협력회사는 사업장 내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한 모든 화학 물질 및 기타 물질을 인식하여 이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취급, 보관,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 및 폐기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유출에 대비한 훈련 또는 대비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외 법령이나 규정에서 금지하는 물질 및 인체 위해 우려 독성물질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따른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3.4 폐기물 관리

협력회사는 사업장 내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특성, 발생량을 파악하고 법규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 후 배출해야 하고,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5 수자원 관리

협력회사는 사업장 내 모든 폐수를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 또는 폐수 처리하여야 하고, 그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 하며, 폐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6 대기오염 관리

협력회사는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에어로졸, 부식성 가스, 분진, 오존층 파괴 물질, 연소부산물의 종류를 파악하고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합니다.

4. 부정부패, 정보공개,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개인정보, 소비자보호

4.1 청렴성 및 부당이익 금지

협력회사는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횡령, 청탁 등 부패행위를 금지하는 청렴성을 준수해야 하고, 반부패 관련 법규 준수를 지속적으로 감시 및 단속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4.2 정보공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회계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협력회사의 노무/안전보건/환경관리 실태, 경영활동, 지배구조, 재무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4.3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회사는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자신 및 제 3 자의 기술 및 노하우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4.4 공정거래

협력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4.5 개인정보 보호

협력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협력회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 포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파기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4.6 소비자 보호

협력회사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를 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5. 경영시스템

협력회사는 경영의사결정 및 사업운영에 인권/노동, 환경보호, 윤리경영, 안전 및 보건을 포함하여 경영시스템 구축하고 아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1) 경영진의 준수 의지표명

협력회사 경영진은 본 규범의 준수책임자로서 준수의지를 사업장 내에 전파해야 합니다.

2) 리스크 파악 및 관리 (노동, 안전/보건, 환경, 윤리 등)

협력회사는 본 규범에서 언급한 모든 분야의 리스크를 파악하고, 중대한 리스크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통제해야 합니다.

3) 목표관리 및 평가, 시정조치 프로세스 운영

협력회사는 본 규범에서 언급한 모든 분야에 대한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달성 현황을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첨부 1] 동원시스템즈 협력회사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

끝.

동원시스템즈 협력회사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

당사는 '동원시스템즈 협력회사 행동규범'(이하 '행동규범')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1. 당사는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이 동원시스템즈와 거래함에 있어 중요한 조건임을 인식하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동원시스템즈와 거래하는 협력회사로서 행동규범의 의무 위반이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과 만약 해당 문제가 해결되거나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동원시스템즈가 당사에 서면 통지를 하여 시정 요구, 거래관계의 중단 또는 종료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합니다.
 2. 동원시스템즈 또는 동원시스템즈가 지정한 자가 당사의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설문 또는 현장방문을 요청하고 필요에 따라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영업활동,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가 침해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원시스템즈의 요청에 협조하여 성실히 대응하겠습니다. 상기에 언급된 예외적인 경우는 동원시스템즈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행동규범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동원시스템즈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관련 시설, 자료, 인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행동규범의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당사의 하청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을 시에도 이들에게 동일하게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3. 당사는 당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당사의 공급업체에게도 본 규범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전달하여 준수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4. 당사는 행동규범 및 준수 서약서가 동원시스템즈에 의해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5. 당사는 모든 확인된 리스크와 이에 대해 취한 후속 조치에 대한 문서와 기록을 동원시스템즈가 요청한 기간 동안 보관하고, 행동규범의 위반 사항을 인지하게 되는 즉시 동원시스템즈에 이를 통지하겠습니다.
- 본 서약서는 2 부를 작성하여 1 부는 당사가 보관하고 1 부는 귀사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